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

의안 번호	239
----------	-----

발의년월일 : '93. 6. 14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제안경위

1. 1993. 5. 3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 논의
2. 1993. 6. 14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오 운균의원의 동의와 김경희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성립

□ 제안이유

1. '91. 7. 9 제정 이후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개정
2.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시로 운영 합리화

□ 주요골자

1. 의회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2. 의원 청가 신청에 따른 허가 절차 개선 (안 제7조)
3. 의안이 2개 위원회 이상 관련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기 (안 제21조)
4. 의안 및 예산안 제출권자에 교육감을 삽입

□ 예산사항 : 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7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제21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8조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도지사로 부터"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부터"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하며, 제2항중 "도지
사는"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94조 (시행규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